

		<h1>보 도 자 료</h1>		
<b>해양수산부</b>		<b>배포 일시</b>	<b>2020. 2. 27.(목)</b> <b>총 6매(본문 2, 참고 4)</b>	
<b>담당 부서</b>	소득복지과	<b>담당 자</b>	• 과장 변혜중, 사무관 이정미, 주무관 정지원 • ☎ 044)200-5463, 5467	
<b>보 도 일 시</b>		2020년 2월 28일(금) <b>석간</b>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28.(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접경지역 어업인들도 받는다

- 3. 2.~4. 30. 신청 접수, 지급단가도 어가당 연 70만 원으로 인상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3월 2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업인(어가 단위)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만 어가(누적)를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기존 섬 지역과 더불어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조건불리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작년 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신청 지역을 검토하여 접경지역을 포함한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島)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원단가 변동 내역>

또한, 직불금 지급단가도 작년보다 5만 원 인상하여 어가당 연 70만 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지급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므로,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동기금 목적 :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마을주민 복리향상 등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의무거주요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50억 이상 적용자,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상위 등급(5억 이상) 적용자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 지역을 북방 해상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島) 조건불리지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에서 ‘조건불리지역’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 참고 1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도서(섬) 및 해상접경지역 어가소득 보전과 지역활성화
- 근거법률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14.10월 제정/'15.4월 시행)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 대상지역 : 모든 도서\* 및 북방 해상 접경지역\*\*
  - \* 시범사업('12년 50km→'13년 30km)을 거쳐 '14년부터 본사업(8km이상)을 추진 하였으며, 수산직불제법('18.12) 개정으로 전 도서를 대상으로 사업 실시
  - \*\* 「접경지역특별법」에서 정하는 해상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포함('20.1 개정)
- 신청대상 :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접경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 중, 연간 수산물판매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 어가단위로 신청
- 지원금액 : 어가당 연간 70만원 ('20년) \* 지원율: 국고80%, 지방비 20%
  - \* ('12~'16) 어가당 50만원/년 → ('17) 55 → ('18) 60 → ('19) 65 → ('20) 70
- 지급요건 :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개인) 및 어촌활성화실천 공동 기금(개인 지급액의 30%) 조성·사용
- 추진 현황 : '14~'18년(5년간) 총 81,819어가 대상 지원

연도	예산	지원 내역			비 고
		도서	가구	단가	
2014	99억원	281	12,967호	50만원	본 사업 개시 ('12~'13년 시범사업)
2015	77억원	323	14,609호	50만원	
2016	78억원	359	18,680호	50만원	제주본섬 포함
2017	90억원	366	18,161호	55만원	천일염 어가 포함
2018	102억원	350	17,402호	60만원	전 도서로 확대
2019	110억원	357	-	65만원	
2020	128억원	-	-	70만원	접경지역 포함

## 참고 2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도서

시·도	시군구	대상지역(도서 및 접경지역)	
		도서 및 접경지역 수	도서명 및 읍면동명
합계	35개	349	
인천	소계	31	
	서구	1	세어도
	강화군	8	강화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교동도, 주문도, 불음도 아차도
	옹진군	22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연평, 소연평,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굴업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선재도, 영흥도
경기	소계	11	
	안산시	2	풍도, 육도
	화성시	4	국화도, 입파도, 제부도, 안고렘섬
	김포시	5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고촌읍, 관내
강원	고성군	5	
		5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충남	소계	23	
	보령시	12	외연도, 효자도, 삼시도, 고대도, 장고도, 녹도, 호도, 월도, 소도, 추도, 허육도, 육도
	서산시	4	고파도, 옹도, 우도, 분점도
	당진시	3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서천군	1	유부도
	홍성군	1	죽도
	태안군	2	외도, 가의도
전북	소계	18	
	군산시	9	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방축도, 말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
	고창군	2	내죽도, 외죽도
	부안군	7	식도, 치도, 대리, 거륵, 상왕등, 하왕등, 진리

시·도	시군구	대상지역(도서 및 접경지역)	
		도서 및 접경지역 수	도서명 및 읍면동명
전남	소계	198	
	목포시	5	외달도, 달리도, 장좌도, 울도, 우도
	여수시	33	야도, 소경도, 대경도, 금오도, 안도, 연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밭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하화, 상화, 사도, 소여자도, 대여자도, 소거문도, 평도, 손죽도, 조도, 동도, 거문도, 서도, 송도(돌산읍), 송도(울촌면), 금죽, 소륙도, 대륙도, (대)운두도
	고흥군	7	연홍도, 화도, 시산도, 득량도, 죽도, 애도, 진지도
	보성군	3	장도, 해도, 지주도
	해남군	4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어불도
	무안군	1	탄도
	영광군	9	상낙월도, 대각시도, 소각시도, 하낙월도, 송이도, 대각이도, 안마도, 석만도, 오도
	완도군	50	평일도, 충도, 황제도, 섭도, 부도, 다랑도, 원도, 장도, 소랑도, 신도, 우도, 후장구도, 대장구도, 대재원도, 마안도, 어룡도, 녀도(노화), 서녀도, 죽굴도, 장사도, 노록도, 노화도, 마삭도,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서화도, 양도, 백일도, 동화도, 모항도, 초완도, 녀도(고금), 소모도, 대모도,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안도, 횡간도, 구도, 당사도, 비견도, 허우도, 금당도, 보길도, 예작도, 생일도, 덕우도
	진도군	25	가사도, 가사혈도, 하조도, 관매도, 관사도, 나매도, 내병도, 상조도, 대마도, 독거도, 독거차도, 맹골도,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눌옥도, 옥도, 외병도, 죽향도, 진목도, 청등도, 모도, 구자, 금호도, 저도
	신안군	61	어의도, 큰포작도, 작은포작도, 선도, 가란도, 고이도, 효지도, 매화도, 황마도, 마산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수도, 임자도,

시·도	시군구	대상지역(도서 및 접경지역)	
		도서 및 접경지역 수	도서명 및 읍면동명
			재원도, 비금도, 상수치도, 수치도, 도초도, 우이도, 서소우이도, 도소우이도, 흑산도, 장도,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가거도, 만재도, 하의도, 대야도, 장재도, 능산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신도, 옥도, 신의도, 고사도, 평사도, 마진도, 율도, 막금도, 장산도, 백야도, 박지도, 부소도, 반월도, 사치도 매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경북	소계	1	
	울릉군	1	울릉도
경남	소계	56	
	창원시	5	실리도, 송도, 양도, 잠도, 우도
	통영시	34	추도, 학림도, 송도, 저도, 만지도, 연대도, 오곡도, 곤리도, 오비도, 지도, 수도, 어의도 읍도, 연도, 입도, 저도, 옥지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두미도, 한산도, 추봉도, 비산도, 좌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상도, 하도, 수우도
	사천시	7	신수도, 마도, 신도, 저도, 진도, 별학도, 율등도
	거제시	4	화도, 고개도, 내도, 이수도
	고성군	2	자란도, 와도
	남해군	3	노도, 조도, 호도
	하동군	1	대도
제주	소계	6	
	공통	1	제주본도
	제주시	3	비양도, 추자도, 우도
	서귀포시	2	가파도, 마라도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 의한 지역만 해당